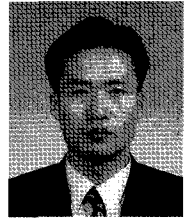


「2004년 신용평가 업무」



송진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부 대리

설비조합 업무부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3일~12월 18일 까지 전국 16개 도시를 순회하며 2004년 신용평가 등에 대한 『조합업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약 1시간에 걸쳐 신용평가 방법, 절차, 서류제출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건설업등록(유지) 요건이 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연대보증인 없이 조합업무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거래』, 협력업체등록시 제출하게 되는 『신용등급확인서』 발급 등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비건설지를 통하여 “2004년 신용평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

1. 신용평가제도

가. 의의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경영적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신용도를 종합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조합원 혜택

-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연대보증인 없이 보증 및 용자거래를 함으로써 기업간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자기 신용에 의한 업무거래로 연대보증인 구득

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연대보증에 따른 심적·물적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신규등록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경우 조합의 신용평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2. 신용평가업무

가. 신용평가 대상

모든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하 “신용평가대상자”라함)이 신용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신용평가를 먼저 받으셔야만 합니다.

나. 신용평가 종류

신용평가는 “정규평가”와 “간이평가”가 있으며, 신용평가대상자는 두 가지 평가방법 중 해당되는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신용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종류	평가대상 구분
정규평가	• 조합원이면서 최근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간이평가	• 최근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조합원 • 정규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이평가를 희망하는 조합원 • 건설업 신규등록 및 가입을 원하는 비조합원

다. 신용평가 원칙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상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는 물론 조합 내부자료와 관공서·금융기관 등의 외부공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용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제출자료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신뢰성 유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외부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와 평가일 현재 법인 또는 대표자가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용등급 중 최하위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 정규평가를 받은 조합원은 기존평가의 유효기간 이내에는 간이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간이평가를 받았던 조합원 및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비조합원이 조합 가입 후 정규평가를 원할 경우에는 정규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신용평가 유효기간

- 신용평가의 유효기간은 신용등급 확정일로부터 평가기준 결산일의 다음연도 해당 결산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까지입니다.

(예시)

- 신용등급 확정일이 2004년 10월 1일인 경우
신용평가 유효기간
 - 결산일이 12월말인 업체 : 2004년 10월 1일 ~ 2005년 6월 30일
 - 결산일이 3월말인 업체 : 2004년 10월 1일 ~ 2005년 9월 30일

※ 신용평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용업무 거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연도의 신용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 최근 결산서상 자산이 70억원 이상
- 중규모 : 최근 결산서상 자산이 1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소규모 : 최근 결산서상 자산이 10억원 미만

3. 정규평가

가. 평가방법

신용등급 구분을 잘 나타내는 신용평점모형, 우? 불량 판별력이 높은 부실예측모형 및 경험적 지표에 의해 가?감점을 부여하는 필터링시스템에 의해 최종 신용등급을 판정하는 복합적인 신용평가방법으로서, 신용평가대상업체의 최근 결산서상 자산금액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나누어 평가기준 및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나. 평가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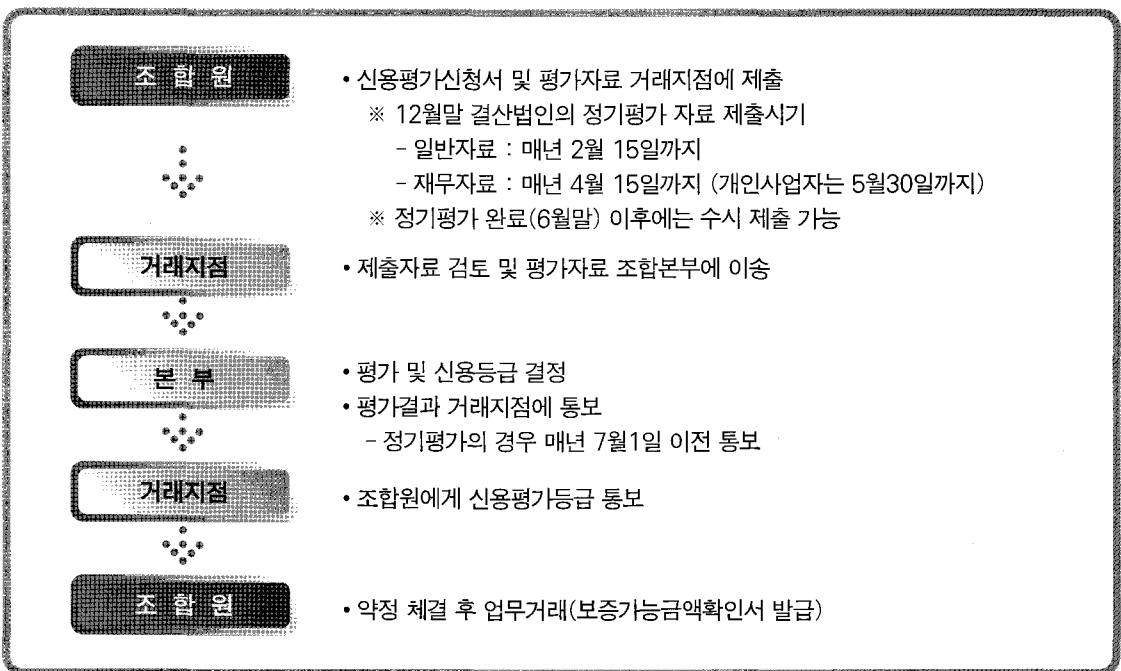
아래표참조

다. 제출서류

정규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자료와 임의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자료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서류명 및 편철순서	확인처
1. 신용평가신청서 (서식 1호)	-
2. 신용평가조사서(조합원 작성용) (서식 2호)	-
3. 해당업종 등록수첩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개인인감증명)	관할법원
5.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법원
6. 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
7. 재무자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원가명세서) * 법인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개인인 경우 "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반드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세무대리인
8. 금융거래상황확인서 (서식 3호)	해당금융기관

※ 기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임의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제출하시는 자료로서, 기본 자료만 제출하신 경우보다 신용등급을 잘 받으실 수 있으니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명 및 편철순서	확인처
9. 직전 사업년도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업종별 협회
10. 직전 사업년도 시공능력순위 확인자료	업종별 협회
11. 특수기술보유 증빙자료 사본(특허 등 산업재산권,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KT, NT, IT인증)	근거서류첨부
12. 상시종업원 증빙자료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상시종업원 각각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해당기관 세 무 사
13. 기술자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업종별 협회장이 발급한 기술자보유현황, 기술자 보유 자격증사본)	해당기관
14. 보유부동산(사옥 및 대표자 개인주택)의 등기부등본	관할법원
15. 담보제공자 상담표 (서식 4호)	담보제공자

※ 서식작성요령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은 "5. 서식작성 및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합 소정서식 (서식1호~4호)은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scolbi.com)에서 다운받으시거나 거래 지점을 방문하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 평가지표 및 배점

(1) 신용평점모형

구 분		평 가 지 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재무항목	안정성	부채비율	10	6	7
		순운전자본대총자본비율	9	5	7
	수익성	총자본순이익률	9	5	7
		이자보상비율	9	6	7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8	5	6
		재고자산회전기간(일)	8	5	0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7	4	6
	규모지표	총자산(원)	0	4	0
		소 계	60	40	40
비재무 항목		건설업경과년수	6	9	9
		상시종업원수	4	6	8
		기술자비중	4	6	6
		시공능력평가액순위	6	8	8
		대표자 재직기간	4	8	7
		공공공사비중	4	6	6
		출자최수	6	8	8
		조합원상태	6	9	8
		소 계	40	60	60
		총 점	100	100	100

(2) 부실예측모형

구 분		평 가 지 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재무항목	안정성	부채비율	11	15	14
		순운전자본대총자본비율	14	0	13
		고정장기적합율	0	7	0
	수익성	총자본순이익율	0	0	10
		이자보상비율	3	6	4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8	5	4
		재고자산회전기간(일)	4	0	0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0	5	4
		자기자본증가율	5	0	0
매출액증가율		0	5	0	

구분	평가 지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규모지표	총자산(원)	4	0	0
	소 계	49	43	49
비재무 항목	건설업경과년수	5	7	9
	상시종업원수	13	12	13
	기술자비중	7	5	4
	대표자 재직기간	0	6	10
	출자좌수	11	9	4
	조합원상태	15	18	11
소 계		51	57	51
총 점		100	100	100

(3) 가·감점항목(필터링시스템)

가 점 항 목	조 건		배 점	
비재무 항 목	특수기술 보유	특허권 건수 × 0.2	3개 항목의 합	최고 2점
		건설신기술, 실용신안권, KT, NT, IT 건수 × 0.1		
		산업재산권(우수건설업자 포함) 건수 × 0.05		
	조합 기여도	전년도 조합 보증실적 (보증금액 - 사고보증금액)의 상위	10%이내	2점
			25%이내	1점
담보 제공	담보배수 (담보제공액/출자지분액)의 정수부분 × 0.3		최고 2점	
부동산 보유	사옥보유 또는 대표자 주택보유		각1점(최고2점)	
	합	계	8점	

감 점 항 목	조 건		배 점	
재 무 항 목	수익성	경상적자	2년 연속 경상적자	- 1점
			당기 경상적자	- 0.5점
		금융비용	2년 연속 금융비용부담률 8%초과	- 1점
			당기 금융비용부담률 8%초과	- 0.5점
	재무구조	자본잠식	자기자본 완전잠식	- 2점
			자기자본부분잠식 (자기자본/납입자본금 < 0.8)	- 1점
	차입규모 및 도급형태	차입금/매출액)1		- 1점
	차입구조	차입금 의존도	0<차입금의존도≤30% & 단기차입금비중≥50%	- 0.5점
			30%<차입금의존도<50%	
			50%≤차입금의존도	- 1점
자료의 신뢰성	가지금금 (주주임원대여 여금등) 총액	자기자본의 40% 이상	- 1점	
		자기자본의 20% 이상	- 0.5점	

감점항목		조건	배점
비재무 항목	보증금청구	하자건수 × 0.2	최고- 1점
		N3 해제 (해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점
	불량거래정보	N2 해제 (해제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0.8점
		N1 해제 (해제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0.5점
	확정채무 연체발생	연체중	- 1점
		최근 2년간 연체사실 유	- 0.5점
합		계	- 10점

* 신용평가모형 개선에 따라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마. 등급부여

○ 신용점수 산출

신용평점모형에서 산출된 평가점수와 부실예측모형에서 산출된 평가 점수를 기하평균한 신용점수에 필터링시스템에 의한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산식)

$$\sqrt{\text{신용평점모형점수} \times \text{부실예측모형점수}} \pm \text{가} \cdot \text{감점모형점수}$$

○ 등급부여

신용평가등급은 아래표 “신용평가등급 및 등급의 결정기준”에서 와 같이 산출된 최종점수에 따라 AAA, AA, A, BBB, BB, B, CCC, CC, C등급의 9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 신용평가등급 및 등급의 결정기준〉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최종 점수	80.4 이상	75.4 이상	69.0 이상	62.1 이상	55.2 이상	48.2 이상	41.2 이상	34.5 이상	34.5미만
		~ 80.4 미만	~ 75.4 미만	~ 69.0 미만	~ 62.1 미만	~ 55.2 미만	~ 48.2 미만	~ 41.2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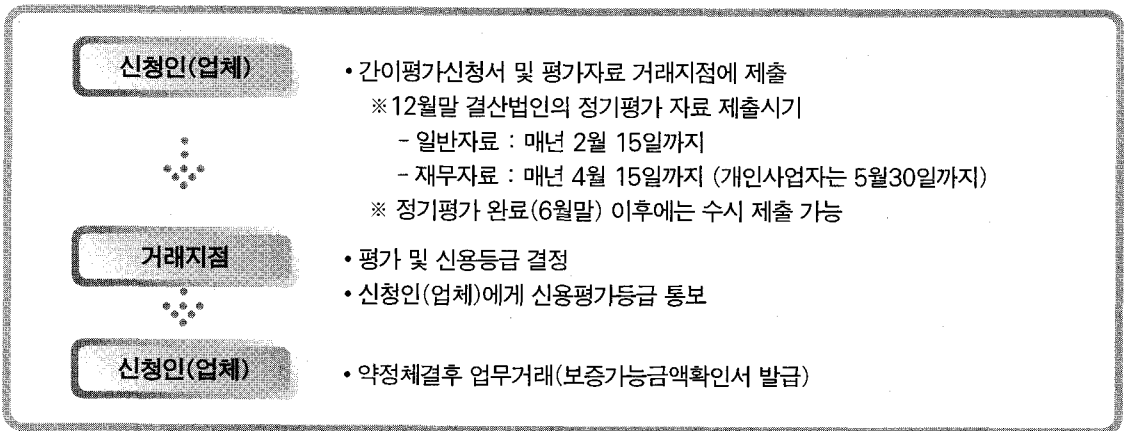
※ 신용평가의 등급 및 결정기준은 모형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간이평가

가. 평가방법

- 정규평가에 비해 평가체계와 등급산출 방법이 간단하고, 제출 서류 또한 정규평가에 비해 간단한 신용평가 방법입니다.
- “간이평가기준표”에 의해 재무항목과 일반항목을 심사하여 평가하며, 신청인의 업력에 따라 3개군(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중요도와 군의 특성에 따라 배점과 적용범위를 달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1군: 최근 결산일 이전 영업기간이 2년 이상
 - 2군: 최근 결산일 이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미만
 - 3군: 최근 결산일 이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

나. 평가절차(흐름도)



다. 제출서류

기본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자료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자료 (반드시 제출)

서 류 명	비 고
1.신용평가신청서 (서식 1호)	신청인이 직접 작성(* 작성요령 참조)
2.신용조사서(조합원작성용) (서식 2호)	

(2) 임의자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서 류 명	확인처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법원
2.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	관할법원
3. 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
4.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법인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개인인 경우 "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반드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세무대리인
5. 특허,건설관련신기술,기타 산업재산권,ISO인증 사본 등	근거서류첨부
6. 보유부동산(사옥 및 대표자 개인주택)의 등기부등본	관할법원
7. 대표자의 건설업관련 기술자자격증 사본	근거서류첨부

※ 임의자료 중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라. 평가지표 및 배점

(1) 간이평가기준표 (재무항목)

구 분	평가지표 및 기준	배점	군별 해당항목			
			1군	2군	3군	
재무항목	자기자본비율 (1군-75%, 2군-85%) 초과	+1점	◎	◎		
	순운전자본대 총자본비율 (1군-50%, 2군-55%) 초과	+1점	◎	◎		
	기업순이익률 (1군-10%, 2군-8%) 초과	+1점	◎	◎		
	부채대 경상이익률 (1군-25%, 2군-45%) 초과	+1점	◎	◎		
	유동부채비율 (1군-200%, 2군-130%) 초과	-1점	◎	◎		
	차입금의존도 (1군-40%, 2군-25%) 초과	-1점	◎	◎		
	자본잠식률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55% 이상	-4점	◎	◎	
		25% 이상	-3점			
		5% 이상	-2점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1점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260% 이상 지속	-1점	◎			
해당 항목수	9	7				

(2) 간이평가기준표 (일반항목)

구분	평가지표 및 기준		배점	군별 해당항목		
				1군	2군	3군
일반항목	대표자의 건설관련 자격증 보유(인정기능사 이상)		+1점	○	○	○
	특수 기술보유	특허 또는 건설관련 신기술보유	+2점	○	○	○
		ISO인증, 기타산업재산권, 품질관련 인증 보유	+1점			
	사옥 보유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1점	○	○	○
	대표자 주택 보유 (대표자 명의)		+1점	○	○	○
	경영계획 평가	평가점수 10점 이상	+2점			○
		평가점수 10점 미만~7점 이상	+1점			
	금융거래불량사실 (법인 및 대표자)	N1-해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점	○	○	○
		N2-해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점			
		N3-해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점			
	평가일 현재 국세체납사		-1점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제재(영업정지 등) 발생시		-1점	○	○	○
	확정채무 연체시 (최근 2년 이내 사실 유무)		-1점	○	○	○
보증금청구시 (최근 2년 이내 사실 유무)		-1점	○	○	○	
해당항목 수				9	9	10

※ 금융거래불량사실의 경우 신설업체는 신청일 현재의 금융거래상태를 평가하며, 신용불량등급 구분 없이 -1점을 부여합니다.

마. 등급부여

○ 간이평가기준표의 재무항목과 일반항목에서 산출한 해당항목 점수를 각각 합산한 후 “간이평가 등급결정기준”의 “등급구간표”에 따라 각각의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등급별 해당점수표”의 해당점수를 기하평균한 점수를 가지고 최종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산식)

최종등급 =

$\sqrt{\text{재무항목등급별해당점수} \times \text{일반항목등급해당점수}}$

- 업력이 짧은 3군 업체인 경우 재무항목심사는 생략하고 일반항목만을 심사하여 평가하며, 일반항목에서 산출된 합산점수에 의한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합니다.
-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기준으로 각 군별 부여 가능한 상한등급을 “간이평가등급결정기준”에 의거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각 군별 부여등급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 군별 부여등급 범위 >

- 1군 : BB, B, CCC, CC, C
- 2군 : B, CCC, CC, C
- 3군 : CCC, CC, C

간이평가등급결정기준
 <등급구간표>

구 분		등 급 구 간 표					
		1군		2군		3군	
		합산점수	등급	합산점수	등급	합산점수	등급
재무항목	등급 부여기준	3점 이상	BB				
		2점	B	2점 이상	B		
		1점	CCC	0점~1점	CCC		
		0점	CC	-1점	CC		
		-1점 이하	C	-2점 이하	C		
	평가등급 (가)						
일반항목	등급 부여기준	3점 이상	BB				
		2점	B	3점 이상	B		
		1점	CCC	2점	CCC	2점 이상	CCC
		0점	CC	1점	CC	1점	CC
		-1점 이하	C	0점 이하	C	0점 이하	C
	평가등급 (나)						
기하평균 점수 (다)		$(다) = \sqrt{(가)에서 산출된 등급별 해당점수 \times (나)에서 산출된 등급별 해당점수}$					

※ 산출된 (다)의 등급별 해당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등급별 해당 점수표>

등 급	BB	B	CCC	CC	C
등급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신용평가의 등급 및 결정기준은 모형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서식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서식 작성요령

- (1) 신용평가신청서 (조합 소정서식-서식 1호)
- 신용평가신청서 상단의 신용평가 선택에서 신청하시는 신용평가의 종류가 정규평가인지 간

이평가인지 반드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란에서 회사설립일은 법인설립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일(개업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신청인에 날인하는 인감은 반드시 법인인감 이거나 조합에 신고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조사서(조합원작성용) (조합 소정서식 - 서식 2호)

신용평가는 업체에서 작성하시는 신용조사서 및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 대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신용조사서 작성시 해당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조합원번호는 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설립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형태는 다음의 구분에 의거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기업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 등록법인 :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법인 (코스닥 등록)
 - 외감법인 : 외부감사를 받고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 기타법인 또는 개인 : 위에 나열한 기업형태 외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등
- 경영형태는 다음의 구분에 의거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경영인 : 대주주가 아닌 자가 경영
 - 대주주(소유주)에 의한 직접경영 : 대주주가 경영
 - 기타 : 전문경영인 및 대주주가 아닌 자가 경영
- 상시종업원은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수를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일은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등록현황 및 인?허가현황은 보유중인

등록업종 및 인?허가현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은행중 주거래은행이란 업체에서 거래하시는 은행중 여신규모가 가장 큰 은행을, 당좌거래은행은 당좌를 개설한 은행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인적사항은 대표자가 여럿일 경우 각 1부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연혁은 설립 후 현재까지 대표자 변경, 업종 추가등록 등회사 경영상 중요한 변동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 및 주요구성원은 대표자를 제외한 주요임원(현장소장 포함)을 기재하시되, 담당업무 구분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보유현황은 상시종업원 중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 모두 기재하시되, 보유 기술자가 많은 경우 별도의 기술자보유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기술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건수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신기술인증 (건설신기술, KT, NT, IT)
 - 우수건설업자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받은 인증서 또는 관련문서
- 업종별 매출은 전년도 기성실적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특히 각 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실적신고 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별 공사실적은 조합 보증대상 공사(기계설비, 가스 시설, 소방시설공사 등)에 한해 전년도 기성실적을 공공부문 기성실적금액과 민간부문 기성실적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장·단기 공사수주(매출)계획은 업체의 경영계획에 의거한 업종별 매출 가능액을 적어 주시되, 주

요거래처(발주자)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합에 신고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에 날인하는 인감은 반드시 법인인감 이거

(서식 1호 - 작성예시 : 정규평가와 간이평가 공통)

신 용 평 가 신 청 서

1. 신용평가 선택 : 정규평가(), 간이평가()

2. 신청인

조합원번호	9000	상호	대한설비(주)
대표자	정 대 한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111111-2222222
회사설립일	1992. 4. 2	사업자등록번호	118-81-10101

귀 조합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용평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
 하며, 첨부서류의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약합니다.

2004 . 2 . 15

신청인 주 소: 서울강남구 청담동 45-1 설비건설회관4층

상 호: 대,한,설,비(주)

대표자: 정 대 한



인감대조
조합에서 날인하는 곳

붙임 : 신용평가관계서류 1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서식 1호 - 뒷면)

※ 첨부서류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정규평가	간이평가
기 본 자 료	1. 신용평가신청서	✓	
	2. 신용조사서(조합원 작성용)	✓	
	3. 해당업종 등록수첩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	
	4.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	
	6. 국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7. 재무자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잔액시표, 원가명세서) *법인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를, 개인인 경우 “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를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외부감사대상법인인 반드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	
8. 금융거래상황확인서	✓		
임 의 자 료	9.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	
	10. 시공능력순위 확인자료	✓	
	11. 특수기술보유 증빙자료 사본 (특허등 산업재산권,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KT, NT, IT인증)	✓	
	12. 상시종업원 증빙자료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상시종업원 각각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13. 기술자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한국기술인협회장 또는 업종별협회장이 발급한 기술자보유현황, 기술자보유 자격증사본)	✓	
	13. 보유부동산(사옥 및 대표자 개인주택)의 등기부등본	✓	
14. 담보제공자 상당표			
* 제4호, 5호 및 13호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7호는 최근2회계연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9호, 10호는 직전 사업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12, 13호중 상시종업원 증빙자료는 반드시 신청서 제출일 전월말 현재나 이후의 자료를 기술자보유현황 자료는 자료의 발급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호의 자료외에 추가자료도 제출 가능.			

* 간이평가서류 제출시에는 간이평가 제출서류란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호 - 작성예시 : 정규평가와 간이평가 공통)

신 용 조 사 서

(신청인 작성용)

I. 기업체 현황

1. 업체개요

조합원번호	9000	상 호	대한설비(주)		
대 표 자	정 대 한	조합거래지점	중앙	출자좌수	100좌
소 재 지	본 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45-1 설비건설회관4층		전 화	02)6240-1035
	지 사			팩 스	02)6240-1039
	공 장	서울 구로구 은수동 176번지		전 화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2	사업자등록번호	118-81-10101		
회사설립일	1992년 4월 2일	조합가입일	1996년 7월 1일		
기업 형태	상장기업() 등록법인() 외감법인() 기타법인 또는 개인(<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영 형태	전문경영인(), 대주주(소유주)에 의한 직접경영(<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주력업종	건설업(<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상시종업원수	총(21)명 {임원(4)명/사무직(3)명/기술직(14)명/기타()}				
결 산 일	월 일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 미제출(O)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보유업종	면허(등록)번호		면 허 (동 록) 일 (양수한 경우 양수일)	
	기계설비공사업	경기 99-102		1992. 5. 10	
	가스시설공사업	서초 99-103		1993. 7. 10	
전문건설업외 인·허가 현황	보유업종	등록번호		인(허)가일	
	소방시설공사업	서초 99-102-1		1995. 8. 8	
거 래 은 행	주거래은행 : (신한)은행 / (청담동)지점				
	당좌거래은행 : (신한)은행 / (청담동)지점				

2.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정 대 한		주민등록번호	500101 - 1411111	
주 소	1 3 5 - 9 5 1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번지 A아파트 1동 201호			전 화	6240 - 0001
				휴대폰	011 - 222- 3333
본 적	서울 마포구 창천동 111번지				
가족사항	부(<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input type="checkbox"/>), 배우자(<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녀(3 명), 기타동거자(1 명)				
입 사 일	1992 년 1 월 1 일	대표이사취임일	1992 년 1 월 1 일		
자격증보유	기계설비기사 1급	자격증취득일자	1972 년 1 월 1 일		
최종학력	1972 년 3 월 한양대학교(대학원) 기계과 졸업(수료)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업 종	최종직위(부서)	
	1973.3~1980.4	현대건설(주)	건설	부 장	
	1981.8~1991.12	세기산업(주)	설비	전 무이사	
	1992.1 ~ 현재	신용설비(주)	설비	대 표이사	
	~				
건설업 종사기간	1973 년 3 월 ~ 2002 년 3 월 (29 년 개월)				
재산현황	동산	2 건	50 백만원		
	부동산	1 건	100 백만원		

주)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함.

3. 회사연혁

년월	내용	년월	내용
92.1.1	법인 설립, 대표자 정대한 취임	95.5.8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취득
92.5.10	기계설비업면허 취득	98.8.1	특허출원(여과포를 이용한 집진장치)
93.7.10	가스시설시공업 1종면허 취득	2000.1	현대산업개발 협력업체 등록
93.1.1	가스시설시공업면허취득(서초93-103)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자료 제출

4. 임원 및 주요구성원 (현장소장 포함)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주요경력 (담당업무)
기술이사	허배관	550101-1058111	018-333-4444	기술총괄
이사	이광자	560101-2058123	018-444-3333	경리업무
부장	장 치	600101-1466718	018-555-6666	현장소장
부장	이용운	620101-1466718	011-555-6666	현장소장
차장	이영탁	610725-1582547	019-444-5555	설계, 기술지원
과장	권청무	620425-1582547	016-742-2259	총무

*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작성

5.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담당업무(직위)	보유 자격증	자격증 취득일
정 대 한	대표이사	기계설비기사 1급	1972.1.1
허 배 관	기술이사	건축배관인정기능사 기계가공기능장	1967.1.1 1970.1.1
이 영 탁	설계, 기술지원(차장)	건설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1급	1990.1.1 1999.1.1
엄 공 조	현장소장(대리)	공조냉동기계기사 2급	1998.2.1
백 만 관	현장소장(차장)	보일러기능사 1급	1968.1.1
전 기 만	기술지원(과장)	전기기사 2급	1991.1.2

* 기술자가 많을 경우 별도 기술자보유 명부 제출

II. 일반현황

1. 특수기술보유 (특허권, 신기술지정, 산업재산권, ISO등)

종류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유효기간)	명 칭 (인증의 범위)
특허	제146215	98.8.1 (99.8.8)	2018.7.31	여과포를 이용한 집진장치

* 특수기술이 많을 경우 별도 기술현황표 제출

2. 업종별매출(직전 사업년도)

업종구분		매출 실적
설비부문	1. 기계설비공사	900,000천원
	2. 가스설비공사	100,000천원
	3. 난방시공업	천원
	소 계	1,000,000천원
설비공사의 전문공사		
제조등 비건설부문		100,000천원
매 출 총 계		1,100,000천원

주) 매출액은 결산서 또는 해당기관에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 발주기관별 공사실적(직전사업년도 설비부문)

발 주 기 관	매 출 액	
	건 수	금 액
공공공사(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등)	30	900,000천원
민 간 공 사	10	100,000천원
계	40	1,000,000천원

주) 공공공사에는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해외공사 포함.

4. 장 · 단기공사수주(매출)계획

업종구분		예상매출액		주요거래처(발주자)
		당해연도	향후 3년간평균	
설비부문	1.기계설비공사	12,000천원	20,000천원	조달청, 세계로건설(주)
	2.가스설비공사	3,000천원	5,000천원	(주)동북아건설
	3.난방시공업	천원	천원	
설비공사와의 전문공사		천원	천원	
제조등 비건설부문		3,000천원	5,000천원	건설자재 판매대리점
매출액 합계		18,000천원	30,000천원	

5. 법인사옥 및 대표자 개인주택 보유

구분	명의인	주소지
법인사옥	대한설비(주)	135-951 서울 강남구 청담동 45-1 설비건설회관 4층
	대한설비(주)	150-900 서울 구로구 운수동 176번지
대표자 개인주택	정대환	135-851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번지 A아파트 1동 201호
		□□□□□□

위 작성한 내용 및 불임의 증빙서류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귀조합 제 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04 . 2 . 15 .

신청인 주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45-1 설비건설회관4층
 상호 대한설비(주)
 대표자 정대환

법인 (인)
 도장

나. 정규평가 제출서류

(1)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

- 조합원의 등록업종, 등록일자 및 유효사항(변경사항 포함)을 확인 하고자 청구하는 것이며, 사본을 제출하시되 법인인감이나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가입업종으로서 등록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합가입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

(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설립일, 대표자, 임원, 회사의 목적(영위사업), 납입자본금 등을 파악하고자 청구하는 것이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업력이 오래된 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최초 취임일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폐쇄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폐쇄등기부등본 : 법인의 본점소재지 변경 또는 등기전산화로 기 등기 기록사항을 마감한 등본을 말하며, 본점소재지 변경의 경우 전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또한,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거나, 법인합병등의 사실이 있었던 업체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인합병 : 해당관청 합병 인가서류 및 피합병 회사의 폐쇄등기부등본
- 개인의 법인 전환 : 폐업사실증명원, 건설업등

록대장

※ 단, 2003년도 정규 신용평가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신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3)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증명)

신용평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대조에 날인한 인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하며, 발급일이 유효기간 이내(제출일 이전 6개월) 인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증명서

제출일 현재 국세체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기성실적증명자료

- 조합 가입대상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소방시설 공사업, 난방시공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전년도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해 공사실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일반자료를 2월 15일까지 제출하시는 경우 같은 기간 협회에 제출한 전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류 1부를 지점에 제출하시면 되며, (조합원사의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업종별 협회에서 기성실적증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시도회에 따라 조금씩 다름)에는 반드시 협회에서 발급한 기성실적증명확인서 원본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제출서식 중 건설공사실적총괄표(서식1)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서식2)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확인 받은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서식3)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 단, 서식1, 2의 작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식3 및 기타 증빙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재무자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 재무자료는 2개년 결산자료 (2003년도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는 당기결산 자료만)를 세무대리인의 날인(여러 장인 경우 반드시 간인한 것)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며, 이에 추가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세무대리인의 날인을 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재무자료 제출의 간편한 방법

3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12월말 결산업체의 경우)하시는 법인세신고서류를 별도 1부 준비하시어 조합에 제출하시면 재무자료 제출에 누락이 없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의 날인을 받은 자료)

- 조합원 중 세무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자체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부감사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감사회계법인의 날인이 있는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7) 금융거래상황확인서 (조합 소정서식-서식 3호)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여러 곳일 경우 모두 제출)에서 금융거래상황확인서(조합 소정서식-서식3)에

확인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시공능력순위 확인자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가입된 업종(기계설비공업, 가스시설시공업 등)은 전년도 시공능력순위 확인자료를 조합에서 일괄 확보하여 평가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 등은 관련기관에서 시공능력순위확인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특수기술보유 증명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우수건설업자, KT, NT, IT인증에 대한 보유증명(원본제시 사본 제출)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건인 경우 모두 제출)

(10) 상시종업원 및 기술자보유 증빙자료

- 상시종업원에는 일용직과 계약직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명부 원본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상시종업원 각각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기술자보유 증빙자료는 상시종업원 중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이나, 기술인협회 또는 업종별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효기간에 대한 주의

- 상시종업원 증빙자료는 반드시 신청서 제출일 기준 전월말 현재(또는 이후) 상시종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은 발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

(11) 보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담보제공자상담표 (조합 소정서식-서식 4호)

신청인이 별도의 부동산, 은행예금증서, 주식 등의 담보를 조합에 제공하고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담보 제공자 상담표를 작성하시게 되며, 반드시 담보제공자 본인이 직접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셔야 합니다.

다. 간이평가 제출서류

간이평가 제출 서류 중 정규평가와 동일한 서류는 정규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상이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자료

정규평가는 반드시 2개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이평가는 업체의 업력에 따라 제출 가능한 재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

서, 최근 사업년도 결산기준일 이전 영업실적이 1년 이하인 경우라면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특수기술보유 증빙자료

• 간이평가에서는 ISO관련 인증도 포함되므로, 관련 인증을 보유 하신 경우 제출하시면 평가에 반영됩니다.

(3) 대표자의 건설업관련 기술자격증 (인정기능사 이상) 사본

• 간이평가에서는 대표자의 건설업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여부가 가산점수에 포함되므로 보유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신청서 및 신용조사서(조합원작성용) 작성요령은 정규평가와 동일합니다.

